

#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3. 12. 3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행정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정보시스템, PC 파일, 종이, 개인정보 영상처리기기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으로 정부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개인정보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2장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원장은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본부장을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
2.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8.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9.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지휘·감독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원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개인정보취급자) ① 개인정보를 수집·열람·수정·삭제 등 직접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